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 토 보 고

### I. 주요내용

-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0조).

### II. 검토의견

#### 1. 안 제6조의2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 안 제6조의2제1항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자에 대한 적용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기등록자의 경우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등록일이 기준이 되는 법문 구조상, 기등록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려면 시행일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의 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sup>1)</sup>

- 아울러 안 제6조의2에서는 방역관리계획의 수립 주체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를 정의함에 있어 제1항에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가금을 위탁사육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제3항에서는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하는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조사 규정을 두고 있어 자기 소유 시설까지 방역관리계획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가 조문상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제1항이 ‘위탁사육’을 전제로 방역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자기 소유 시설’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데, 이는 제3항에서 ‘소유시설’을 조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체계와 부합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음.

제3항은 방역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이 방역관리계획의 대상인지가 애초에 모호하다면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6조의2제1항에서 방역관리계획 수립의 범위에 ‘자기 소유 축산관계시설’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sup>2)</sup>

---

1) (예시) <신 설> 안 부칙 제3조(기등록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등록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예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사육농가 및 본인이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에서**의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 2. 안 제6조의3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등)

- 안 제6조의3제2항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실제 위반 주체는 계약사육농가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농가의 책임이나 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음.

현행 「축산법」 제22조제7항 및 제8항<sup>3)</sup>은 사육농가가 사육방법이나 시설 등을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농가도 일정한 주체로서 개선행위의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위반에 대해 오직 계열화사업자만이 일방적으로 점검·개선 주체가 되는 구조는 사육농가와 법

- 
- 3)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축사·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책임 분담 측면에서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계약사육농가에 대해서도 별도의 점검·개선 의무 또는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sup>4)</sup>

### 3. 안 제60조 (과태료)

○ 안 제60조제1항제2호<sup>5)</sup>는 제6조의2제3항<sup>6)</sup>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안 제60조제2항제3호의<sup>87)</sup>은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계약사육농가 및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함.

그런데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조사를 거부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두 조항 모두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는 동일 행위에 대한 이중 처벌

---

4) (예시) (단서 신설) 이 경우, 계약사육농가는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개선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5)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6) 제6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하는 축산관계시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7) 제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8.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계약사육농가 및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가능성 및 과태료 금액의 불일치라는 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됨.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 등 단계별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면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이행 여부 등 확인을 위해 각 단계별 축산관계시설 출입조사가 필요하고, 과태료도 출입조사 대상에 따라 각각 부과되어야 하는데, 축산계열화사업자와 축산관계시설 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 과태료 부과대상을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에 대해 출입조사를 거부한 경우 행위의 장소와 주체는 하나인데도 해당사업자를 조문상 “계열화사업자 본사(제60조제1항제2호)”로도, 또는 “시설의 영업자(제60조제2항제3호의8)”로도 해석할 수 있어 여전히 동일한 행위에 대해 두 개의 과태료 조항이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가 실무상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조항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실제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 법문상 기준이 없어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를 법문에 명확히 규정하거나, 우선 적용 조항을 명시하는 방법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sup>8)</sup>

- 또한, 안 제60조제1항제1호<sup>9)</sup>는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안 제6조의2 제1항<sup>10)</sup>에 따른 방역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승인 받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60조제2항제3호의7<sup>11)</sup>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안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함.

이는 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승인받은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보다 5배나 높게 규정되어 있어 해당 과태료가 행위의 비난 가능성 및 법익 침해 정도에 비례하는지에 대한 균형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의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예시) <단서 신설> 다만, 동일한 행위가 제1항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우선 적용한다.

9)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받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10) 제6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 닭, 오리 등 가금을 위탁사육하는 자(이하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휴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계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최초 방역관리계획 수립 후 2년마다 새로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제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7.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및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안 제60조제2항제3호의7의 방역관리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도 승인받지 않은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같이 상한 과태료 5천만원을 적용하기 위해 안 제60조제1항제2호를 신설하여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안 제60조제2항제3호의7의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사업장(본사)와는 법적 지위가 다르므로 과태료 1천만원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 개 정 안                                                                                                                                                                                                                                                                                                                                                                                                                                   | 농림축산식품부 수정의견                                                                                                                                                                                                                                                                                                            |
|-----------------------------------------------------------------------------------------------------------------------------------------------------------------------------------------------------------------------------------------------------------------------------------------------------------------------------------------------------------------------------------------------------------------------------------------|-------------------------------------------------------------------------------------------------------------------------------------------------------------------------------------------------------------------------------------------------------------------------------------------------------------------------|
| <p><b>제60조(과태료)</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받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p> <p>〈신설〉</p> <p>2.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p> <p>3.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p> <p>4.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p> <p>5.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p> <p>6.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 실시</p> | <p><b>제60조(과태료)</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받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p> <p>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p> <p>3. (개정안 제2호와 같음)</p> <p>4. (개정안 제3호와 같음)</p> <p>5. (개정안 제4호와 같음)</p> <p>6. (개정안 제5호와 같음)</p> <p>7. (개정안 제6호와 같음)</p> |

| 개 정 안                                                                                                                                            | 농림축산식품부 수정의견                                                                                  |
|--------------------------------------------------------------------------------------------------------------------------------------------------|-----------------------------------------------------------------------------------------------|
| <p><u>및 점검 결과와 개선조치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축산계열화사업자</u></p>                                                                                     |                                                                                               |
| <p>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p> <p>3의7.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및 가금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p> | <p>② (개정안 2항과 같음)</p> <p>3의7.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p> |

(전문위원 김 성 완)